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 장

제39호      2019. 10. 21(월)

##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521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522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1
○ 남원시 조례 제1523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남원시 조례 제152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남원시 조례 제1525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남원시 조례 제1526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3
○ 남원시 조례 제1527호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	----- 44
○ 남원시 조례 제1528호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남원시 조례 제1529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남원시 조례 제1530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남원시 조례 제1531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남원시 조례 제1532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남원시 조례 제1533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 남원시 조례 제1534호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	----- 82
○ 남원시 조례 제1535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83
○ 남원시 조례 제1536호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95
○ 남원시 조례 제1537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3

<b>회 람</b>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1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창안등급”을 “채택제안 등급”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7명”을 “10명”으로, “수시 구성하되”를 “구성하되”로, “부서의 장으로”를 “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창안등급”을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안등급”을 “채택제안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창안자”를 “채택제안자”로 한다.

제19조 중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을 “채택제안등급으로 선정되는”으로, “제안자”를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로, “별표 1의 기준”을 “별표 1”로, “부여한다”를 “준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제안자”를 “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으로,

“별표 2의 기준”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을 “등급은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안포인트제 운영)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준다.

②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포인트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포상자의 잔여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준다.”로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 기준 (제19조 관련)

구 분	채택제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채택제안자	금 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7	
	은 상		0.5	
	등 상		0.3	
	장려 상		0.2	
채택제안 시행공무원	-	해당 없음	0.2	1억 초과 예산 사업
			0.1	1억 이하 예산 사업
직무발령 공무원	-	-	1.0	

- 비고**
1. 공동제안의 경우 :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에게만 인사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
  2. 채택제안자와 채택제안 시행자가 동일인일 경우 :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및 실적가점만 부여
  3. 채택제안 시행 공무원인 경우 : 실적가점만 부여 (단, 채택제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일부터 6개월 이상 업무 담당자)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점수	시 상 내 역 (부상금)		비고
		채택제안자	채택제안 시행자	
금 상	95점 이상	2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은 상	90점 이상	1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동 상	80점 이상	1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장 려 상	70점 이상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별표 3]

제안포인트 지급 및 포상 기준 (제20조의2)

○ 제안포인트 지급 기준

구 분	해당부서 채택제안	실무위원회 채택제안
점 수	2	3

비고 : 채택제안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은 제안포인트 미부여

○ 제안포인트 포상 기준

누적포인트	포 상 금	비 고
60 이상	30만원	
50	25만원	
40	20만원	
30	15만원	
20	1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u>창안등급의 결정</u>  3. ~ 6. (생략) ④ ~ ⑪ (생략)</p>	<p>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 <u>채택제안 등급</u>----- -----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u>수시</u>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u>부서의 장으로</u> 구성 운영한다.  ③ ~ ⑤ (생략)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 3. (생략) 4. <u>노력제안의 선정</u> 5. (생략)</p>	<p>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0명</u> ----- <u>구성</u> <u>하되</u>----- ----- ----- <u>담당급 이하의 공무원으로</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채택된 <u>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u>에서 <u>부상을 수여</u>하되, <u>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u>한다. 다만, <u>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u>한다.</p>	<p>----- <u>제안자와 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공무원</u>----- <u>별표 2</u>----- ----- ----- ----- ----- ----- ----- -----</p>
<p>② 채택제안의 <u>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u>에 참가한 <u>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u>한다.</p>	<p>② ----- <u>등급은 별표 2</u>----- ----- -----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u>제13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으로 채택</u>하기는 <u>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u>한다.</p>	<p>&lt;삭 제&gt;</p>
<p>⑤ 시장은 <u>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u>는 <u>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u>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⑥ 시장은 <u>제안의 심사 또는 실</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제20조의2(제안포인트제 운영) ①</u>  <u>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준다.</u></p> <p><u>②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포인트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포상자의 잔여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는다.</u></p>
<p>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u>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p>	<p>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u>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u></p> <p>② ----- -----</p>

# 시 보

현 행	개 정 안
<p>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u>적용한다</u>.</p>	<p>-----          -----          -----<u>적용하되,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준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18일

남원시 조례 제 1522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 의견 심의 조정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출장,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시민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적정 인원을 안배하여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장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별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생활담당이다 한다.

### 제5장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 제19조**(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①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표협의회는 시민위원회의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시 소관 업무담당 국·소장 또는 주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대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두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담당 국·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간사는 대표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⑦ 위원장은 대표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 제6장 재정 및 실무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협의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3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제23조제13항제4호 중 “두 번에 걸쳐”를 “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p> <p>⑬ <u>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 3. (생략)</p> <p>4. <u>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u></p> <p>⑭ 삭 제</p> <p>⑮ (생략)</p> <p>⑯ <u>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u>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p> <p>-----</p> <p><u>휴가일수는 최소 5일 이상 -----</u></p> <p>⑮ (현행과 같음)</p> <p>⑯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u></p> <p>1. <u>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u></p>

<p>⑰ · ⑱ (생 략)</p>	<p>2. <u>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 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u> ⑰ · ⑱ (현행과 같음)</p>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4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73명”을 “1,1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48명”을 “1,07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02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52	-				
4급	6	4	1	1		
5급	56	25	2	3	3	23
6급 이하 계	990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정원 : <u>1,073명</u></p> <p>2. 집행기관의 정원 : <u>1,048명</u></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1. ----- <u>1,102명</u></p> <p>2. ----- <u>1,077명</u></p> <p>3.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5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총무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국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로, “환경과, 재정과”를 “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경제농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을 “경제농정국”으로, “안전재난과, 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를 “산림녹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하천·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공해배출업소·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교통관리·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날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을 둔다.</u></p>	<p>제3조(국의 설치) ----- ----- <u>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u>-----.</p>
<p>제5조(<u>총무국에 두는 과</u>) ① <u>총무국에 총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를 둔다.</u></p> <p>② <u>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31. (생략)</p> <p>32. <u>환경보전·공해배출업소·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33. <u>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u></p> <p>34. ~ 36. (생략)</p>	<p>제5조(<u>자치행정국에 두는 과</u>) ① <u>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u>----- ----- ----- <u>재정과</u>-----.</p> <p>② <u>자치행정국장</u>----- -----.</p> <p>1. ~ 31.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34. ~ 36. (현행과 같음)</p>
<p>제6조(<u>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u>) ① <u>안전경제건설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u></p> <p>② <u>안전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u></p>	<p>제6조(<u>경제농정국에 두는 과</u>) ① <u>경제농정국</u>----- ----- <u>농정과</u>----- ----- ----- <u>산림녹지과</u>----- ----- -----.</p> <p>② <u>경제농정국장</u>-----</p>

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  
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  
시설에 관한 사항

12. (생략)

13. 하천·수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개설·관리 및 교량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  
한 사항

19.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20. 교통행정·교통관리·교통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23.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4.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2. (현행과 같음)

<삭제>

24. (현행과 같음)

2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지

원

<신 설>

<삭 제>

제6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하천·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오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공해배출업소·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교통관리·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 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 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6 호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리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

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

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

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 1. 민간위탁의 목적
-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 4. 수탁기관의 의무
- 5.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남원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처리결과에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7 호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남원시민 및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제10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 제3장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1조**(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4. 시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8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이상의 스포츠지도사”를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 된다.”를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단원의 자격) (생략)</p> <p>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p> <p>2. (생략)</p>	<p>제23조(단원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 ----- <u>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u>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인사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총무국장이</u> 되며, 위원은 <u>교육체육과장, 남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감독이</u> 된다.</p>	<p>제10조(인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교육체육과장</u> ----- ---- <u>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u>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⑦ (생략)</p> <p><u>&lt;신설&gt;</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29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u>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u>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u>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u> <u>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u> <u>실내운동기구(러닝머신, 실내용자전거,</u> <u>운동보조기구 등)</u>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0 호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대상)”을 “(이용대상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단서 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를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으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복지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별표]

##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분	기준	내용	이용료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진단판정	1일(회)	각종 진단비	무료	4,000원	
재활치료	1일(회)	물리, 언어, 특수, 작업, 심리 치료 등	무료	5,000원	
직업훈련	월	직업적응 및 보호작업 등	무료	10,000원	
그 밖에 시설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대상) (생 략)</p> <p>&lt;신 설&gt;</p>	<p>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 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생 략)</p> <p>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 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 사 등 자격을 갖춘자를 위탁 운 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로 한다.</p> <p>③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기준(정원기준)은 보건복지 부지침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범 위에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 는 사업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다만, 인건</p>	<p>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 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남원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

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생략)

제12조(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 ----- 경우에는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1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9조”를 “제4조 및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장애인 <u>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u></p>	<p>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u>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u></p> <p>2. <u>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u></p> <p>② 장애인 <u>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u>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 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u>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 <u>2020년 12월 31일까지</u>----- -----.</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18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u>2021년 12월 31일까지</u>----- ----- ----- -----</p>

현 행	개 정 안
<p>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3. (생략)</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u>2018년 12월 31일</u>-----.</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u>300원</u></p> <p>② (생략)</p> <p>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p>	<p>-----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u>2021년 12월 31일</u>-----.</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 -----.</p> <p>1. ----- ----- ----- ----- <u>300원</u></p> <p>2. ----- ----- ----- <u>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p>

# 시 보

현 행	개 정 안
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u>제9조에</u>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u>제4조 및 제9조</u>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2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호 중 “건축비”를 “건축비(대수선 및 증축비용 포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를 “국내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20억원까지”를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중 “범위에서 규칙”을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4(산업용지 임대 지원)** 시장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산업용지를 임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중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을 “기업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주사무용 건물을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면적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제외)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  
----- 국내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증

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내기업의 신설·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설·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2. 기존 남은 부지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

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업이 관내에 신설·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한 번만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설·증설 투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축·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

<삭 제>



<신 설>

-----.

제19조의2(물류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 지원은 투자유치 기업이 시 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부지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

<신 설>

② (생 략)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생 략)

<신 설>

<신 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4(산업용지 임대 지원)

시장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  
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산업용지를 임대 지  
원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  
모투자기업에 연구비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2(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

사 지정) 시장은 남원일반산업  
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  
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3 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토·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기간”을 “토요일,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장시간”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중 “목욕탕”을 “목욕탕 운영일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업무담당주사”를 “주민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u>토·일요일</u>, 국경일, 설·추석 연휴 기간은 휴무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개장시간</u>을 조정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5조(개장시간) ① ----- ----- -----<u>토요일</u>, 공휴일-----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운영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u>운영일 및 개장시간</u>-----.</p> <p><u>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략)</p> <p>2. <u>목욕탕 개장시간</u> 조정에 관한 사항</p> <p>3. ~ 5.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목욕탕 운영일 및</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 <u>주민생활업 무담당주사</u>로 한다.</p>	<p>제16조(간사) ① ----- ----- ----- <u>주민생활업 무담당</u>-----.</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4 호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5 호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심한 불편  
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국장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 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

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

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도 조례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 제16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도 조례 제17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도 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

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도 조례 제21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뒤쪽]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이동지원센터(☎626-1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b>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b>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 의 관계
이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영구 장애 ( 장애 정도 )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장애 ( )	
차량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 사유				
년 월 일  <b>남 원 시 장 (인)</b>				

210mm×297mm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6 호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 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신혼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 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자금 대출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 주택 전세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입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신혼부부 전용 주거지원 전세 자금 대출 상품 가입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포함)의 신혼부부 전용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함.	

####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10월 21일

남원시 조례 제 1537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를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설치신청(별지 제2호서식)”을 “설치 신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경우(별지 제3호 서식)”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별지 제4호 서식)”를 “경우”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수도사용료와 별표 4의”를 “수도사용료 요율과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27조 제5항 중 “15세제곱미터”를 “15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한다.

별표 3, 4, 5, 6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감면대상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 분부터 신청하는 세대에게 적용한다.

[별표 3]

##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4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mm)	구경별 정액요금(원)	비 고
13	990	
20	1,660	
25	2,000	
32	3,260	
40	5,160	
50	9,270	
75	16,870	
100	27,210	
150	64,170	
200	92,540	
250	122,580	
300	148,950	

[별표 4]

### 업종별 구분표 (제25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나.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가게) 다. 학교시설 라. 기숙사 마. 사회복지수용시설 바. 노인복지시설(단, 급식·요양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업태 나.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다. 운반급수(최종단계요율 적용)
목욕장용	가 일반 목욕장업(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의시설 포함)
산업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별표 5]

##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을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 서비스 업소	○ 50퍼센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공무원의 누수확인일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 전액
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 비고 :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별표 6]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위 법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 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공사자·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 방해·훼손·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물·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 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변경



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  
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3호 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  
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3. (생략)

② (생략)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  
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업종  
별 수도사용료와 별표 4의 구경  
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  
다.

②·③ (생략)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 ① -----  
-----  
-----  
-----  
-----

1. -----  
-----  
경우

2. -----  
-----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  
-----  
-----  
----- 수도사용료 요율  
과 별표 3에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

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생략)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별표 4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5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의 수도사용료 전액

5. 시장이 지정한 모범 개인서  
비스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  
원해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  
징하는 이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

-----

-----

-----

-----

-----

----- 별표 6 -----

----- . -----

-----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생략)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5조(이의신청) ① -----  
-----  
-----  
-----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 수수료-----  
-----  
-----  
-----  
-----.